

의안번호	2213853
의 퇴 인	곽상언 의원
회 답 일	2025. 12. 17.
추계번호	25A5824

수소 및 수소화합물 사업법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26조(정기검사 및 수시검사)	- 수소·수소화합물 배관업자는 그 수소·수소화합물 배관시설에 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 또는 수시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검사를 받아야 함. 다만,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정기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음(제1항) - 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의 대상과 기준, 그 밖에 검사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함(제2항)	의무규정
2	안 제33조(안전교육)	- 수소·수소화합물 배관업자 및 시공자의 안전관리에 관계되는 업무를 행하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교육을 받아야 함(제1항) - 수소·수소화합물 배관업자 및 시공자는 그가 고용하고 있는 자 중 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 대상자에게 안전교육을 받게 하여야 함(제2항) - 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 대상자의 범위·교육기간 및 교육과정, 그 밖에 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함(제3항)	의무규정
3	안 제41조(수소·수소화합물 수급예측)	-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해당 연도 이후 5년간의 수소·수소화합물 수급 상황에 관한 예측(이하 “수소·수소화합물 수급예측”이라 한다)을 하여야 함.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함(제1항) 1. 수소·수소화합물의 수요량 2. 수소·수소화합물의 생산량 및 수출량·수입량 3. 수소·수소화합물 저장시설의 처리능력 4. 그 밖에 수소·수소화합물 수급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사항	의무규정
4	안 제42조(수소·수소화합물 비축시책의 수립 및 시행 등)	-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수소·수소화합물 비축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함(제1항) -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수소·수소화합물 비축시책을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수소·수소화합물과 관련이 있는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(이하 이 조에서 “비축시책담당기관”이라 한다)으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음(제2항).	의무규정 재량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		-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수소·수소화합물 비축시책의 시행을 위한 비축시책담당 기관의 수소·수소화합물 비축시설에 대하여 안전성을 검사할 수 있음(제3항) - 제3항에 따른 수소·수소화합물 비축시설의 안전성 검사에 필요한 검사 항목 및 절차 등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함(제4항)	
5	안 제49조(부담금 징수 사무 등의 위탁)	-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46조에 따른 부담금과 가산금의 징수, 제47조에 따른 부담금과 과오납금의 환급·충당 및 제48조에 따른 과다환급금의 징수에 관한 사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음(제1항) -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에서 취급 수수료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음(제4항)	재량규정

Ⅱ.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 등 근거 규정
1	안 제26조(정기검사 및 수시검사)	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2	안 제33조(안전교육)	
3	안 제41조(수소·수소화합물 수급예측)	
4	안 제42조(수소·수소화합물 비축시책의 수립 및 시행 등)	
5	안 제49조(부담금 징수 사무 등의 위탁)	

2. 상세 사유

가.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(안 제26조)·안전교육(안 제33조)

- 안 제26조 및 안 제33조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수소·수소화합물 배관시설에 대하여 정기검사 등을 하고, 수소·수소화합물 배관업자 및 시공자의 안전관리자에 대해 안전교육을 실시하면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
- 다만, 제정안은 정기검사 등의 대상과 기준, 안전교육 대상자의 범위·교육기간 및 교육과정에 대해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현시점에서 구체적인 추가재정소요를 추계하는데 한계가 있음

나. 수소·수소화합물 수급예측(안 제41조)

-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해당 연도 이후 5년간의 수소·수소화합물 수급 상황에 관한 예측을 하면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
- 다만, 제정안은 수소·수소화합물 수급 상황 예측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추가재정소요를 추계하는데 한계가 있음
 - 참고로, 정부조직개편 이전 산업통상자원부는 「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34조(수소유통전담기관의 지정) 제1항 및 제2항에 근거하여 수소유통전담기관에 지원 중인 사업(수소유통기반구축사업)을 통해 수송용 수소에 대한 수급계획·전망을 일부 수행하고 있음
 - 현행 「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」에 근거한 주요 재정사업 현황은 다음과 같음

[표 1] 「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」에 근거한 주요 재정사업
(구 산업통상자원부 소관)

(단위: 억원)

세부사업	회계	2022 결산	2023 결산	2024 결산	2025 예산
수소유통 기반구축 사업	에특회계	128	114	98	59
저탄소 암모니아 유통구조 구축 시범 연구사업	에특회계	5	20	50	22
해외 청정수소·암모니아 생산 및 도 입 기반구축 사업	에특회계	—	31	14	17
액화수소 신뢰성평가센터 구축사업	에특회계	—	25	65	107
청정수소인증기반구축사업	기후기금	—	—	23	41
수소산업진흥 기반구축사업	에특회계	51	82	76	92
수소 저장·운송 클러스터 구축사업	에특회계	—	—	12	57
수소생산기지구축	에특회계	198	88	81	128
그린수소 생산 및 저장 시스템 기술개 발(R&D)	에특회계	81	34	27	—
액체수소 충전소용 저장용기 및 수소 공급시스템 기술개발 및 운영실증 (R&D)	에특회계	43	70	46	46
수소연료전지발전클러스터 구축사업	전력기금	—	—	1	5
수소안전 기반구축 및 안전관리 강화	에특회계	88	111	47	9

주: 예산서 상 「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」을 근거법률 중 하나로 적시하고 있는 사업을
동법에 근거한 재정사업으로 집계함

자료: 구 산업통상자원부

다. 수소·수소화합물 비축시책의 수립 및 시행 등(안 제42조)

□ 안 제42조제3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수소·수소화합물 비축
시책의 시행과 관련하여 비축시책담당기관의 수소·수소화합물 비축시
설에 대하여 안전성을 검사하면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

□ 다만, 제정안의 제도와 유사한 석유비축시설에 대한 안전성 검사의 경
우 비축시책담당기관(한국석유공사)에 대해 별도의 재정지원이 없어 추
가재정소요가 발생한다고 단정할 수 없음

○ 또한, 제정안은 수소·수소화합물 비축시설의 안전성 검사에 필요한 검사

항목 및 절차 등에 대해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재원 지원을 하더라도 추가재정소요를 추계하는데 한계가 있음

라. 부담금 징수사무 등의 위탁(안 제49조)

- 안 제49조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안 제46조에 따른 부담금과 가산금의 징수 등의 사무를 위탁한 기관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하면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
- 다만, 제정안에 따른 부담금 규모, 징수 업무의 정도 등을 추정하기 어려워 동 사무 수행 관련 필요 경비를 추계하는데 한계가 있음
 - 참고로, 현행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인건비 및 경비 지원과 관련하여 “회계위탁관리비”는 2025년 예산 기준 2억 7,900만원, “회계관리비”는 3,900만원 수준임

Ⅲ. 부대의견

- 없음

Ⅳ. 작성자

-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추계세제총괄과	윤주철	권아영

-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윤주철	02-6788-4655	yjc@nabo.go.kr